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의 진상 규명과 기억을 둘러싼 투쟁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한국전쟁과 학살,
그 진실을 찾아서』

김동춘 저, 파주: 사계절, 2013

이 승 역*

책의 저자 김동춘은 한국사회를 연구하는 사회학자이자 시민활동가이다. 또 한때 정부에서 일한 관료이기도 하다. 저자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사건을 규명하는 일을 이 세 가지 직업을 통해 수행한 바 있다.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는 이에 관한 저자의 회고 기록이다.

책은 저자의 역정을 따라가며 각 시기마다 경험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전쟁기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저자의 문제의식이 짙트는 시기이다(1-3장). 유족들의 트라우마, 정부의 부인, 언론의 외면, 교육의 부재, 기록의 부재라는 총체적 부조리를 통해 과거이자 현재로서 학살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이 부분의 내용이다. 두 번째는 사회활동가로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원. 주요 논저 :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대통령 국정수행 기록화의 진전」, 『기록인』 제2호 2008; 「기록 평가선별 결정 분석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12호, 2005.

서 진상규명 활동을 하던 시기이다(4-5장). 저자는 범국민위원회의 간부로서 유족과 시민사회의 진상규명활동을 국가 공식활동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세 번째는 정부의 공식적인 진상규명 활동이 진행된 시기이다(6-7장). 저자는 2005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4년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국가의 공식 조사활동은 1960년 4.19 직후 국회의 조사 이후에 처음이었다. 저자는 책에서 진실화해위 조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한 유족이 “40년 만에 진화하셨네요”라고 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진실화해위는 실로 사건발생 60년 만에 그리고 유일한 공식 조사가 미완으로 끝난 지 40년 만에 피학살자 유족에게 처음으로 찾아간 정부였던 것이다. 저자는 이를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과이자 그 연장선상에 있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따른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포괄적 과거 청산’을 천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2004년 광복절 담화는 결정적 계기였다고 하였다. 저자는 진실화해위의 조직과 인력 구성, 예산 편성과 조달, 기록의 작성과 관리에서부터 조사활동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정부 진상규명 기구의 활동 양태들을 마치 당시 현장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기술하였다. 마지막은 공식 활동 후의 일들과 반성을 내용으로 한다(8-9장). 여기에는 활동 결과에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던 유족, 활동가들의 반응 그리고 보수언론, 정당의 비난, 이명박정부의 뒤집기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저자의 평가가 기술되어있다.

저자는 한국, 베트남, 이라크 등에서 전쟁기 자행된 민간인 학살을 한 국가나 지역의 일이 아니라 인류가 같이 대처해야 하는 본질이 같은 사건으로 규정하였다. 학살사건의 진상 규명과 계속 기억하기야 말로 정의가 넘치는 나라 만들기라고 보았다. 또한 저자는 유족들에게 들은 것을 함께 기억해주는 한편 이들의 단편적 기억을 전체적, 국가적, 사회적 기억으로 만들면 이것이 역사이자 진실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언명은 보존기록을 통한 학살사건의 진상규명 그리고 공적으

로 보존되는 기록을 통한 사회적 기억의 구축과 관련하여 보존기록전문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1980년대 북미에서는 보존기록의 평가선별에 있어 특정 집단의 이해가 아닌 당대 사회의 대표적 보존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되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존재하는 기록을 통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실천은, 저자가 경험한 것처럼, 황폐한 현실에 의해 가로막히게 될 것이다. 대표적 학살사건인 거창사건 조사중 저자는 유족회, 거창시민회의, 거창군청, 거창희생자 명예회복 입법을 추진한 국회의원실, 입법 후 사건처리 실무를 담당한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 그 어디에도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건관련 변호사의 증언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기록을 찾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가에 책임이 있는 사안에 관한 기록을 국가에서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나라마다 기본적인 상황의 차이는 있다. 영화 ‘타인의 삶’으로 잘 알려진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의 악명 높은 민간인 감시는 막대한 양의 감시 자료를 만들어 냈다고 알려져 있다. 그 방대한 자료는 통일 후 어떻게 되었을까. 필자는 베를린의 독일연방기록원을 방문했을 때 이 자료들이 폐기되지 않았고, 많은 이용자들이 이 비밀경찰 자료를 보러온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 적이 있다. 구미의 공공기관에는 등록조차 안 되었을 법한 문서더미를 쌓아 놓은 서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구미 보존기록 관리에서 평가선별이 중요한 분야가 된 것은 이렇게 함부로 버리지 않은 누적 기록을 가치에 입각해 체계적으로 감축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우리나라 공공기록 보존의 모순된 양상을 지적하였다. 즉,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와 권위주의 정부에서 공무원들의 기록 생산 기술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지만 그것의 보존은 참담하다 싶을 정도로 퇴행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민감한 과거사관련 기록만이 아니다. 다양한 이유로 정부기관의 핵심 의사결정과 관련한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일반적이며 어느 정도는 제도에서 비롯된 상황이다. 예컨대 분류단위별 기록에 동일 보존기간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보존기간을 전반적으로 세분화시켜 보존기록물이 포괄적으로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록을 파편화시키는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폭 넓은 맥락의 보존기록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체로 공무원들은 재가를 받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능숙하게 기록을 만들어내지만, 결재 후에 그것을 국가기록으로 보존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이다. 그나마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는 진실화해위가 일부 지방경찰서에서 찾아낸 보도연맹 자료처럼 제때 폐기하지 않은 ‘업무태만’의 산물이었다. 저자의 말처럼 공공기록을 통한 과거사 규명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기록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이며 심지어는 공식화해야 할 기억을 삭제하는 그런 나라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은 미국 등 외국의 자료나 특히, 사건 당사자의 구술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학살사건의 진상 규명 활동에서 유족 당사자주의의 불가피성과 동시에 그 한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저자는 학살사건을 다루는 관점에 대하여 유족 개인의 기억을 공동의 기억으로,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기억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피해 당사자의 경험은 곧 사건의 본질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 같다. 그것을 ‘사건 전체의 진실’과 ‘피해자의 진실’ 사이의 긴장으로 설명하였다.

2000년대 이후 유족이 참여한 과거사 진상규명 운동에서는 사건 전체의 진실에 대한 유족들의 인식에 일정한 굴절이 지적되는 경우가 있다. 거창사건 유족들이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법안에 명예회복운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인근 지역의 사건이 포함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이나, 이 책의 내용은 아니지만 의문사 유족단체가 의문사진상규명법에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희생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했던 것

이 그것이다. 두 단체 모두 직접적 피해자이면서 가장 적극적 운동 주체였다. 그렇지만 거창은 같은 시기 학살이 자행된 지역의 하나였고, 허원근 사건처럼 피해자가 민주화운동 가담자는 아니지만 전형적인 국가 폭력에 의한 의문사 사건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는 사건 자체에 대한 기억에 사건 이후의 트라우마나 명예회복운동중 생긴 신념이 사건에 관한 현재화된 기억으로 투영되었기 때문이었다. 감시와 탄압, 연좌제에 의한 사회진출 차단, 경제적 어려움 등 유족들을 괴롭혀 온 삶은 학살사건 사건 자체의 기억을 굴절시켰다. 저자가 사건의 전체적 진실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레드콤플렉스나 양민대 폭도의 이분법을 유족들은 쉽게 떨쳐내지 못했다.

사건 전체의 진실과 피해자의 진실 사이의 긴장을 사회적 기억에 관심을 가져야 할 보존기록전문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독일학자 알프 뢰트케의 ‘기억의 정치(politics of memory)’와 ‘기억하기(practices of remembrance)’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기억의 정치’는 하나의 개별적 기억이 국가 공식 기억으로 규정되어 이를 기념일로 기념하고 교육함으로써 공고히 구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기억은 언급되지 않으며 기억의 공식화를 둘러싼 치열한 서사적, 물리적 대립이 발생한다. 이에 비해 ‘기억하기’는 개별적 경험을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억의 정치’가 통합을 지향하는 거대서사 구조를 가진 기억의 제도화라면, ‘기억하기’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일상화된 기억의 개별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전자가 목적의식적으로 구축되는 것이라면, 후자는 개인의 의식과 삶 속에 침착된다. ‘기억의 정치’나 ‘기억하기’를 보존기록을 통한 기억의 사회화와 연계할 경우, 양자는 구별되는 정의와 방법론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부기관인 진실화해위의 활동은 ‘기억과의 전쟁’이라는 이 책 제목처럼 정치로서의 기억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록이

국가 공식기록으로 국가기록원에 보존됨으로써 기억의 제도화가 일단락된 것으로 본다면 선부른 생각이다. 학살의 기억을 둘러싼 전쟁 상황은 책 마지막 부분에 저자가 비장하게 쓴 것처럼, 진실화해위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또 언론과 학술연구에서 끊임없이 무시되고 반복되면서 오히려 더욱 더 침예해 졌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일상의 기억하기에서 비롯된 다양한 서사는 ‘주류와 대안’이라는 정치화된 기억의 문법을 따르지 않는 ‘기억의 댐’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존기록을 통한 사회적 기억의 문제를 다루는 보존기록전문가가 해야 할 고민에는 이상과 같은 전체와 개별에 관한 두 가지 차원의 진실 모두가 포함되어야 할지 모른다.